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54호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25.3.13. 시행)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hyena05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